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562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고단56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502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동거하면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잠이 든 사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6. 10:0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아 너랑 너무 sm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4. 7. 09:41경 위 피해자에게 "돈 줄테니까 sm 한번 하자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10-0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판사 윤찬영